

의안번호	제 245 호
승 인 년 월 일	1993 . 12 . 23 . (제9회 제3차 원 회의)

의 결 내 용
원안가결

議 案 :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

(안)

제 안 자	보 은 군 수 (재 무 과)
제 안 년 월 일	1993. 1 2 . 16

의 결 내 용

1.안건명 :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

(안)

2.제안 이유

- 공유임야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공유임야관리업무 추진체제 정비
 -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,폐합조치에 따라 예산13340 -685(93.9.22)호로 동 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'94.1.1부터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한바 있어, 공유림의 보존,확대등 관련업무의 효율적,지속적 추진을 기하기 위함.
-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제 정비
 -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 조례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고,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며,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요율체계를 정비함.

3.주 요 골 자

-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함.
(조례23조5항)

4.개정 조례(안)

"별첨(안)"과 같음

5.입 법 예 고 기 간

- 예고기간 : 1993.11.9 - 1993. 11. 30
- 입법예고방법: 군보게재,군청,각읍면계시판게재
- 의견제출: 없음

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.1.1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 (안)
제 23조 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① - ④ (생략) ⑤ <u>산림법시행령제 62조제 1항제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</u> <u>0분의 10으로 한다.</u>	제 23조 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① - ④ (생략) 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</u> <u>시행령제 62조제 1항을 준용한다.</u>